

인천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1가단279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618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1가단279155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근택, 유혜진

피 고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

주문

-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8.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46,702,8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6,702,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6,702,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393호로 C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23. C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2018.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C에 대한 원고의 채권원리금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날인 2021. 12. 7. 자를 기준으로 46,702,822원이다.

나.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카명103600호로 C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C는 2019. 9. 20. 인천 강화군 D 및 E의 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 재산으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6.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20. 4. 8.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44,972,000원으로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 부동산의 부담금 206,705,309원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보아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의 매수신청이 없자 2020. 5. 7.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한편 C는 배우자인 G와 함께 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피고에 대한 현금작성서(‘새 성전 건축 작성 현금’)를 작성하였고, 2018. 4. 29.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현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2018. 4. 29.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교회 현금의 형태로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가 2009. 4. 12. 건축현금으로 300,000,000원을 작성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2018. 4. 29.경 그중 일부의 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신도가 교회에 대하여 하는 현금의 통상적 성격에다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가 피고에게 현금을 하게 된 경위 및 현금이 이루어진 시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2009. 4.경 피고에 대한 현금작성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와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C와 피고 사이에 실제 현금 명목으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진 2018. 4. 29.경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군수, 김포세무서장,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과세정보 내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위 및 위 경매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교부청구서 내지 배당요구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C의

채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수익자의 악의

- 1) 채무자인 C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2) 이에 대해 피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74명의 신도들로부터 C와 마찬가지로 헌금작성서를 교부받아 건축헌금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을 뿐, C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C는 교회의 설립시부터 출석하였고 9명의 장로 중 수석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함으로써 피고와 C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전까지 피고에게 한 헌금은 1회당 대략 2,000원에서 2,400,000원 사이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인 2018. 4. 29.경 피고에게 이례적으로 고액의 헌금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 전날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 46,702,8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702,8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상회복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